

# 코웨이 협력사 행동 규범

Best Life Solution Company, 코웨이는 우리의 혁신으로 건강하고 편리한 생활환경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규범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환경적 책임과 기업윤리 선진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코웨이 협력사로서 함께 이행해나가야 할 노동 및 인권 존중, 환경에 대한 책임과 윤리에 관한 기본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 코웨이는 협력사가 본 규범을 준수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협력사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 본 규범은 UN 세계인권선언 및 UN 기업과 인권 프레임워크 이행 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책임감 있는 산업 연합(RBA,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등 주요 국제 가이드라인 및 지침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 인권 노동 (Human Right and Labor)

### 1. 차별 금지

협력사는 채용, 승진, 보상, 교육 등 고용 관행에 있어 인종, 나이, 성별, 신체, 종교 등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에 따라 차별하지 않습니다.

### 2. 아동노동 금지

협력사는 아동노동(해당국가의 최저 고용 연령 이하의 피고용인)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연소근로자(해당국가 법에 근거)는 안전보건 측면에서 위험한 작업에 투입하지 않아야 하며, 협력사는 관련 법이나 규율에 따라 연소근로자에게 적절한 지원과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 3. 자발적 근로

협력사는 어떤 직원도 정신적, 신체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의사에 반하여 일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고용조건이 자발적일 것을 보장합니다. 또한 협력사는 모든 직원에게 현지 언어(또는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고용계약서를 제공해야 하며, 고용을 조건으로 신분증, 여권 또는 노동 허가증 등 근로자의 개인 문서를 보관하지 않습니다.

### 4. 근로시간 준수

협력사는 해당 국가가 법으로 규정한 주당 최대 근무시간보다 더 일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해당 국가가 정한 최대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아야 하며, 초과근무를 할 경우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가 필요하며, 해당 국가 노동관계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5. 인도적 대우

협력사는 근로자에 대한 폭력, 폭언, 성희롱 및 학대, 차별, 정신적 또는 신체적 강압 등 어떠한 비인도적 대우를 금지합니다. 또한 직장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괴롭힘을 금지합니다. 피해 발생시 적절한 보호와 구제 조치를 시행하며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 6. 임금

협력사는 해당 국가의 임금 관련 법규(최저임금, 초과근무 수당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며, 근로자에게 보상 기준에 따른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담긴 급여명세서를 제공합니다.

## 안전 보건 (Safety and Health)

### 7. 산업 안전 및 보건

협력사는 산업안전을 위해 모든 직원들이 위험 요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며, 근로자에게 적절한 개인보호 장비를 제공하고,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지속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업무 관련 상해 및 질병의 예방과 근로자 유지 및 사기 증진을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합니다.

### 8. 비상사태 대비

협력사는 발생가능한 비상사태 상황을 파악하고 비상사태 대응 계획 및 절차를 적용하여 비상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 환경 (Environmental)

### 9. 환경법규 준수 및 오염 예방

협력사는 환경 관련 법규 및 보고 관련 요구사항, 코웨이의 환경/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대기, 우수, 폐기물 관리에 힘쓰며, 배출시 환경오염 가능성이 있는 화학 물질과 기타 물질을 파악하고, 해당 물질의 안전한 취급과 사용 및 폐기가 이뤄져야 합니다.

### 10. 제품 함유물질 규제

협력사는 제품 함유물질 관련법 및 규제 사항, 제품 관련 표지(라벨링) 관련 법규와 고객 요구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 윤리 (Ethics)

## 11. 반부패

협력사는 윤리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협력사는 모든 형태의 뇌물, 부패, 금품수수 및 횡령을 금지하며, 이를 모니터링하고 실행을 강화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비윤리 행위 신고 채널 및 제보자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 12. 공정경쟁

협력사는 공정경쟁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가격, 입찰, 거래 등 모든 절차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합니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어떠한 부당한 행위도 하지 않습니다.

## 13. 책임 있는 광물 조달

협력사는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방법을 통해 취득한 원자재(무장세력이 점거한 광산에서 채굴된 광물, 산림 보존 및 벌목 금지 지역에서 벌목된 목재 등)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원자재, 부품, 제품에 포함된 탄탈륨, 주석, 텅스텐, 금 등 콩고민주공화국이나 인접국가에서 심각한 인권을 유린하는 무장세력에게 직간접적으로 자원 또는 편익을 제공하며 생산된 광물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14. 개인정보 보호

협력사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처리, 전송 및 공유에 있어서 관련 법규 준수와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합니다.

## 경영 시스템

협력사는 본 규범의 내용은 포괄하는 범위의 경영 시스템을 채택하거나 구축해야 합니다. 해당 경영시스템은 (1) 참여기업의 기업활동 및 제품 관련 법규 및 고객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2) 본 규범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3) 본 규범과 관련된 운영 리스크를 파악하고 완화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주요 내용	일자
코웨이 협력사 행동 규범 V.1.0	2017년 4월
코웨이 협력사 행동 규범 V.2.0	2022년 2월

- 본 규범에 대한 문의사항은 [sustainability@coway.co.kr](mailto:sustainability@coway.co.kr)로 주시기 바랍니다.